

#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희국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36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8. 31.

발의자 : 김희국 · 강기윤 · 김석기  
김예지 · 추경호 · 성일종  
김정재 · 한무경 · 김영식  
송석준 · 최승재 · 金炳旭  
김형동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, 현재 그 업무영역이 「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」 상의 유지관리대행,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상의 정밀안전진단 등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.

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,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등을 개발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.

이에 현행법에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

려는 것임(안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신설 등).

##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4장에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2(협회의 설립 등)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,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진단전문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.

⑤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8조의3(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)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50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.

제38조의4(「민법」의 준용)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

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법률 제1744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토안전관리원”을 “국토안전관리원, 협회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제38조의2(협회의 설립 등) ① 안</p> <p><u>전진단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,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진단전문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</p> <p>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</p> <p>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.</p> <p>⑤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<u>&lt;신 설&gt;</u>	<p>제38조의3(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)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50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</p>

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.

### <신 설>

법률 제1744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

제6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(생략)

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

제38조의4(「민법」의 준용)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.

법률 제1744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

제6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국토안전관리원, 협회  
-----  
-----

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	----- 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③ • ④ (생 략)	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